

-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1)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 다)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 (1)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 (2) 처분권자는 (1)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 라) 징계의 종류와 효력(「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관련 법 규
중 징 계	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p>「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1조</p>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급여 전액 지급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관련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p>「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1조</p>